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민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56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3월 30일

발 의 자: 최민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동욱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
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
남창진, 박상혁, 박성연,
유만희, 윤기섭, 이성배,
이원형, 허 훈, 황철규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로는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창업 초기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 법률 지원을 수행하기에 근거가 미흡함.
- 특히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‘임차인’이나 ‘사업자’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,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- 이에 창업예정자가 계약 도장을 찍기 전 선제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여,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창업예정자에 대한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 지원 근거 마련 (안 제3조 단서)
- 나. 창업 시 계약 및 권리관계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지원 조항 신설 (안 제8조제3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후단 중 “제8조제2호”를 “제8조제2호 및 제3호”로 한다.

제8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제8호의2 및 제8호의3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창업 시 계약 및 권리관계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한다)에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<u>제8조제2호</u>를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~ 10. (생략)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8조제2호</u> 및 <u>제3호</u>-----.</p> <p>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창업 시 계약 및 권리관계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지원</u></p> <p>4. ~ 11. (현행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 제3호에 의해 창업 시 계약 및 권리관계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지원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 및 기관의 각종 참고자료 등 확인결과 이는 관련부서(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)에서 예산을 기편성¹⁾하여 추진 중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다만, 참고자료로 제33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첨부하였음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경 명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imkmi080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2026년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사업명	예산액(천원)
임대차 피해구제 및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	237,000

상가 임대차 분쟁예방 및 신속해결 지원

소상공인정책과장 : 김경미 ☎ 2133-5530

소상공인협력팀장 : 허근행 ☎ 5155 담당 : 유경호 ☎ 5156

담당 : 김시혜 ☎ 5378 담당 : 서혜진 ☎ 5157

□ 사업개요

○ 목 적

- (분쟁예방) 상가임대차 분쟁 전문 상담 및 해결 방법 안내 등 분쟁 예방 및 완화
- (분쟁해결)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단계별 및 맞춤형 조정으로 신속한 임대차 분쟁 해결

○ 근 거

- 「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」 제9조(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등) 및 제10조(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)

○ 주요내용

- (상담센터*) 상가임대차 분쟁 전문 상담 및 해결 방법 안내, 조정 연계

*상담위원 : 18명(공인중개사 17명, 행정사 1명) *알선위원 : 상담위원 중 3명 위촉

- (조정기구*)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, 계약갱신, 임대료 증감, 계약 해지 등

*조정기구 : 20명(교수 3, 변호사법무사 12, 감정평가사·건축사 4, 공인중개사 1)



- (분쟁사례) 누리집 온라인 상담사례 및 유튜브 홍보영상물 조정 사례 제공

□ 추진목표

세부목표	추진시기	운영내용
상담센터 상시 운영	'26.1.~12.	· 일일 상담위원(3명) 상시 배치 운영
분쟁조정위원회 상시 운영	'26.1.~12.	· 상시 조정신청 접수 및 조정절차 운영
홍보물 제작	'26.3.~12.	· 분쟁조정 사례 동영상 제작 및 게시

□ 추진계획

- ('25.12.) '26년 상가임대차 상담실 운영 계획 수립
 - 온·오프라인을 통한 전문 상담 및 조정연계 서비스(신청서 작성 등) 제공
- ('26.1.) '26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
 - 신속한 분쟁해결 노력과 맞춤형 조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 도모
- ('26.3.) '26년 상가임대차 상담위원 역량강화 교육 계획 수립
 -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위한 협상교육, 민원품질 향상위한 민원응대 교육
- ('26.4.)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사례 홍보 영상물 제작 계획 수립
 -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분쟁사례를 발굴하여 영상물 제작 및 유튜브 게시
 - ▶ 유튜브 구축('24.1.2.) 및 영상물 게시('26년 1월말 조회 실적 누계 70,011회)

□ 추진실적

- ('26.1.) 상가임대차 상담(전화·온라인·방문) 건수 : 956건
- ('26.1.)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진행 건수 : 9건

□ 향후 추진 일정

- 상가임대차 전문상담 및 분쟁사례 제공 : '26.1.~ 상시
- 상가임대차 분쟁해결 맞춤형 조정 운영 : '26.1.~ 상시

□ 예산집행 현황

(단위 : 천원, % / '26.1.31. 기준)

사업명 (예산명)	'26년 예산			'25년 최종예산	집행액 및 집행률	
	본예산 (a)	이월·추경 등 (b)	예산현액 (A=a+b)		원인행위액 (집행률)	집행액 (집행률)
임대차 피해구제 및 유통업 상생환경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*	212,500	-	212,500	228,720	10,000 (4.7)	10,000 (4.7)

*상권영향조사 실시(22백만원), 장기안심상가 점검수당(2.5백만원) 제외